

◆ 政府 施策 ◆

輸出承認 대폭 改善 검토

— 商工部, 네거티브시스템 轉換 추진...내년 하반기 시행계획 —

정부는 현재의 수출승인제도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화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절차상의 정부승인 업무를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현재의 수출승인제에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의 경우를 사전에 고시하고 고시되지 않은 모든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공부는 수출승인의 네거티브시스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등 주요국가에 수출입제도와 관련법안 및 운용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 사전 수출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섬유류 등 수출 쿼터품목, 국가간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 품목,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필요한 품목, 신용장개설 이후 수출대금 회수시간이 3년을 넘는 수출거래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상공부는 수출승인에 이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년 200만건이 넘는 수출승인 건수가운데 약 95% 정도가 세관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3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과 일람불신용장 방식에 의한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사전 수출승인을 면제하는 등 면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반영,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수출승인은 현재 2만달러이내의 일람불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고 있다.

계열화품목 55개 신규규정 - 상공부, 95년도 中企계열업종 및 품목고시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55개 품목을 지정계열화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계열화의 실효성이 사라진 4개업종과 151개 품목을 지정계열화 대상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한 95년도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은 종전 42개 업종 1160개 품목에서 36개 업종 1053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대일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촉진을 위해 분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5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지정의 의미나 실효성이 사라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모기업과 관련단체에 부담만 주고 있는 4개 업종과 151개 품목은 대상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계열화제도는 모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품목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촉진 및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분업화가 바람직한 품목을 상공자원부 장관이 매년 지정, 공고하는 제도로 계열화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는 계열화품목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계열화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요를 확보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계획생산과 경영안정을 돕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구조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정계열화업종과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 공동사업계획 작성 제도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發電所 9기 293만 KW 추가 건설 - 商工部, 長·短期 전력수급대책 확정 -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98년까지 건설키로 한 발전소 29기 1212만1천KW외에 추가로 9기 293만KW를 더 건설키로 했다.

또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전소를 점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총 11기 446만 KW를 조기 준공하는 한편 적정 전력품질을 유지하고 광역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송·변전시설 투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전력수요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중·단기 전력수급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상공부는 올 여름 전력최대수요가 전년 대비 500만KW 늘어난 2669만6천KW까지 증가, 전력공급 예비율이 2.8%까지 떨어지는 수급불안을 겪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확장이 계속돼 전력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현재 추진중인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한다 해도 예비율이 2~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오는 98년의 전력예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98년까지 건설키로 한 29기의 발전소외에 내년중 울산복합화력 보강과 경인에너지 증설을 통해 50만KW를 증설하고 96년에는 60만KW 규모의 울산복합화력을 신규건설키로 했다.

97년에는 보령(60만KW)과 서천(30만KW) 복합화력 및 울산스팀터빈(30만KW)을 신규건설하며 98년에는 화천·청평수력 18만KW 증설과 보령(30만KW) 및 서천(15만KW) 스팀터빈을 신규건설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들 발전소를 매년 6월 이전에 준공,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내년 6월 준공예정인 60만KW급의 무주양수 발전 1, 2호기의 가동시점을 2개월 앞당기는 등 총 11기의 공기를 2~24개월 앞당겨 준공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전력수요 관리의 일환으로 여름철 휴가·보수조정 요금제도를 개선, 휴가철에 3일연속 3천KW이상 사용을 절감한 업체는 요금을 할인해 주고 적용기간도 종전 8월 두째, 셋째주에다 7월 셋째주를 추가키로 했다.

또 최대전력수요 발생기간에 계약전력 5천KW 이상인 일반 및 산업용 수용가 가운데 1일 한차례씩 5일이상 일정수준(최소 30분, 계약전력의 20%) 이상 전력사용을 줄일 경우 요금을 감액하는 자율절전요금제도를 신규도입키로 했다.

淸淨에너지 技術開發 23억 支援 - 商工部, 내년 1월 技術개발대상과제 공모 -

상공자원부는 내년도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2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 1월중에 기술개발대상과제를 공모, 접수키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기술의 요소 및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PEC 청정석탄 기술 워크숍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98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및 석유 청정, 이산화탄소 에너지이용기술을 중심으로 1월중 기술개발대상과제를 공모한후 전문가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확보된 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러한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인 전력·제철·정유업계를 중심으로 관련업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등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對開途國 경험자금 支援 강화 - 정부, 내년 2억弗규모 계획 -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DCF 지원액은 올해 1억 2770만 달러로 작년대비 2배로 늘었는데 내년에는 2억달러 규모로 다시 올해의 두배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財務部는 94년 對개도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년에 EDCF지원이 승인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이집트, 가나 등 6개국 11개 사업에 총 1억 2770만달러이다.

특히 이중 필리핀 민다나오 송배전망 확충사업에 지원키로한 1070만달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한 협조융자로서 지난 92년 10월 세계은행(IBRD) 및 93년 6월 ADB와 협조융자계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사업이다.

재무부는 “현재 베트남, 중국등 12개국으로부터 27개사업에 총 4억달러 규모의 EDCF 지원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내년도 EDCF 지원규모를 2억달러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DCF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구체적으로는 중국(하남성의 4천만달러상당의 TDX 설치등 총 1억달러규모), 인도네시아(3천만달러), 폴란드(TDX 등 2천만달러), 베트남(티안탄상수도 및 하노이 8번 도로등 5천만달러)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중 정부 차원의 협의단을 파견해 후속심사를 벌이고 신규지원사업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용자등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94 EDCF 지원실적(승인기준)

(단위 : 백만원(백만 \$))

국 명	사 업 명	차 관 액
인도네시아 필리핀	실업교육 개선사업	8,110 (10.0)
	민다나오 송배전망 확충사업	8,645 (10.7)
	송전설비사업	11,322 (14.0)
	전화망 현대화사업(2차)	8,249 (10.2)
미얀마 중국	송배전망 확충사업	13,587 (16.8)
	남항대교 건설사업	12,038 (15.0)
	용구항 확장사업	6,420 (8.0)
	동녕철도 복원사업	8,025 (10.0)
이집트 가나	연길비행장 확장사업	8,025 (10.0)
	폴리에스터 직물공장 건립사업	12,027 (15.0)
	LPG용기 제조공장 건설사업	6,400 (8.0)
6개국	11개 사업	102,848(127.7)

기업 外貨資金 조달 · 운용폭 擴大

— 財務部, 3단계 外換制度개혁안 마련 —

내년부터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수출선수금및 연지급(외상)수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中繼貿易을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대금의 先영수가 허용된다. 수출입 수수료 지급과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유화되고 대외채권의 회수의무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차관 도입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 해외증권 발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 등 자본 거래분야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역시 크게 완화된다.

財務部는 내년도에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외환제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포함, 오는 9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중장기 외환제도개혁案을 마련하고 金發審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1단계 외환제도개혁은 내년 2월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분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봄 임시국회에서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한 다음 하반기에 외환규정을 다시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내년도에 시행될 외환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지급수입 허용기간은 현재 30~150일에서 60~180일로 확대된다.

또 연간 수출액기준 대기업이 5%, 중소기업은 10%로 묶여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대기업이 10%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영수한도가 아예 폐지된다.

中斷貿易은 현재 외환유입 부담때문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수입대금 결제 30일전까지의 先영수가 허용돼 중계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는 현재 연간 30만달러 이상의 외화가득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화된다.

수출입 수수료의 경우 수출입대금의 10% 또는 건당 20만달러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대금을 비롯한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대상이 현행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확대된다.

대외채권·채무를 현금흐름없이 상쇄시키는 상호계산에 의한 결제도 내년에 전면 자유화된다. 상호결제는 현재 이용대상기업이 국내기업과 해당기업의 해외법인및 지사간 거래, 외국기업과 해당기업의 국내법인및 지사간의 거래등에 제한 되고 있으나 모든 기업에게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허용된다.

경상거래관련 대외지급증 자유화된 거래는 현재 인증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단순보고인 신고제로 전환돼 첨부서류가 원칙적으로 1종으로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당일에 처리된다.

기업의 자본거래 자유화의 폭도 내년에 크게 확대된다.

우선 중소기업을 비롯 첨단분야, 외자기업및 사회간접자본(SOC)民資참여기업에 대해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고 해외증권발행한도도 올해 25억달러에서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해외투자는 외국환은행의 認證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건당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되는 반면 韓銀허가대상은 1천만달러 초과에서 3천만달러 초과로 축소되는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현재 14개업종이 지정돼 있는 해외투자제한업종도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된다.

국내 제조업체와 종합상사의 해외금융업 투자도 재무부가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내년중 영업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기업의 △증권투자 △해외예금 △해외신용공여 △해외부동산투자 등 해외자산운용도 한결 자유화된다.

해외증권투자는 개인이 1억원, 법인은 3억원 한도내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내년에 각각 5억원 및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외화예금은 현재 국내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해외금융기관 예치는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게 수출실적의 30%까지, 최고 3억달러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제한되고 있는 해외 외화예금을 일반법인은 회사당 100만달러까지, 개인 또는 개인기업은 3만달러까지 허용하되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거래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신용제공은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년에 30만달러이하 거래를 자유화키로 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와 종합상사에게만 허용되는 자산운용용 해외부동산 취득가능 업체가 연간 수출실적 1억달러이상인 기업(93년기준 63개사)에 까지 확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외환제도개혁을 내년중에 실시한 다음 96~97년과 98~99년의 2, 3단계 개혁조치를 통해 외환제도개혁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 標準 활성화 적극 추진

— 工振廳, 99년까지 2천여종 단체규격제정 유도 —

공진청은 산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생산자 관련단체가 크게 늘어 국가표준만으로 표준화의 수요를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국가표준이 없는 분야와 국가표준보다 품질수준이 높은 분야, 신기술·신상품 개발등 기술변화가 빠른분야, 특수용도의 제품분야등을 단체표준 제정의 우선 대상분야로 선정하고 99년 까지 2천여종의 단체규격 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산업표준원을 단체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 외국단체 규격의 정보제공과 기술교육을 전담토록하며 내년 1년간 단체표준 제정능력이 부족한 단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표준제정 단체들이 품질인증 업무를 엄격히 실시토록 권장, 소비자들이 품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인증표시제품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등에서 KS표시제품, ISO 인증획득공장 생산제품등과 동등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단체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내에 단체표준화 제도와 단체별 규격제정현황을 수록한 단체표준 안내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단체등에 배포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단체표준 품질인증단체로 지정받게되면 회원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품질인증마크표시 승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단체표준화는 동일업종의 생산자들이 제품의 성능·구조·형상·치수·절차·방법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조직적으로 준수하여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등을 꾀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표준화의 도입이 국가표준으로부터 진행되어 민간의 표준화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安全基準 미달업체 사후관리 강화 — 工振廳, 電氣用品 안전관리법 운용지침 改正 —

공진청은 불량품 유통을 방지하고 전기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활동상태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등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르면 그간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품질경영 체제및 제품의 안전도검사등을 평가하던 것을 공진청및 시·도지사가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상태에 따라 A·B·C·D등급으로 나눠 평가토록했다.

A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5년마다, B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3년마다, C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매년 사후관리를 차등실시하며 품질경영 상태가 미흡한 C,D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인체에 위해한 전자파장해 시험 기준에 미달시 종전에는 개선조치만하던 것을 시증제품을 전부 수거하는 한편 3개월의 업무정지 조치토록 강화했다.

이밖에 식품위생관련시험의 기준 미달시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토록했다.

한편 공진청은 내달 10일까지 각시·도 전기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기준 해설및 평가방법등을 교육하는 한편 2650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품질경영 상태를 일제히 평가하여 등급에따라 적절하게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종합낙찰제 추가 적용 대상품목 공고 - 9개 품목, '95. 1. 1부터 시행 -

조달청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0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41조 및 재무부고시 제1993-7호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구매 공급하는 다음의 9개 물품을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조달청 공고 제 1994-121호, '94. 12. 9)했다.

<공고내용>

1) 종합낙찰제 추가적용대상 품목(9개 품목)

- ①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한다)
- ② 항온항습기(20냉동톤 이하의 전산실용에 한한다)
- ③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한다)
- ④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에 한한다)
- ⑤ 공기청정기(40평형 이상에 한한다)
- ⑥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한다)
- ⑦ 에스컬레이터
- ⑧ 전기온수기(축열식에 한한다)
- ⑨ 발전기(800KW 이상에 한한다)

2) 기타 품목별 입찰서와 함께 제시할 품질등의 표시사항, 에너지 소모비산정방식, 입찰절차,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은 조달청 종합상담실에 비치 안내하고 있으므로 열람하시기 바람.

品質革新 汎企業운동으로 展開

— 電氣・電子等 100개 표본업체 選定 집중지도 —

우리 제품의 품질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100PPM 품질혁신운동이 범국민적 기업 운동으로 전개된다.

정부와 경제5단체는 우리제품의 품질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경제5단체가 중심이 돼 품질혁신운동을 기업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100PPM 품질혁신운동이란 생산된 제품 100만개중 불량품이 10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품질관리 운동이다.

정부 및 경제5단체는 100PPM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5단체를 주축으로 대대적인 의식 제고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산하에 전담 추진팀을 설치, 업계 의식제고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100PPM 운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협회 및 중진공에 전문연구과정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는 공진청에 전문진단팀을 구성, 업체의 기술적애로사항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하고 국내기술진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는 외국인기술자를 초청해 진단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자동차·전기전자 등 주요 소재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100개업체를 표본업체로 선정, 100PPM 목표달성시 까지 집중지도키로 했다.

100PPM 운동이 민간기업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품질혁신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동화자금, 중소기업기반 조성자금 등을 통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성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함께 수상근로자의 해외견학 및 시찰등을 실시하는 등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